

2020년 하반기 적용

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

2020. 06.

— 공통부분 —

2020년 하반기 적용

- 제1장 적용기준 -

2020. 6.



국 토 교 통 부
한국건설기술연구원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
－ 보완	1-7-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.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. 2.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”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	1-7-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.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. 2.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”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 3. <u>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 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,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.</u>	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－ 보완	1-7-9 환경관리비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·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른다.	1-7-9 환경관리비 1.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·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제61조의 규정을 따른다. 2.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,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. (단위 : TON/㎡) 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폐콘크리트류</th><th>폐금속류</th><th>폐보드류</th><th>폐목재류</th><th>폐합판류</th><th>혼합폐기물</th><th>총계</th></tr><tr><td rowspan="4">신축</td><td>주거용 단독주택</td><td>0.03200</td><td>－</td><td>0.00051</td><td>0.00300</td><td>0.00174</td><td>0.00653</td><td>0.04378</td></tr><tr><td>아파트</td><td>0.03561</td><td>－</td><td>0.00066</td><td>0.00416</td><td>0.00233</td><td>0.00874</td><td>0.05150</td></tr><tr><td>철근콘크리트조</td><td>0.04888</td><td>－</td><td>0.00117</td><td>0.00141</td><td>0.00445</td><td>0.00664</td><td>0.06255</td></tr><tr><td>철골조</td><td>0.02920</td><td>－</td><td>0.00117</td><td>0.00071</td><td>0.00167</td><td>0.00353</td><td>0.03628</td></tr><tr><td rowspan="4">해체</td><td>철골철근콘크리트조</td><td>0.04087</td><td>－</td><td>0.00117</td><td>0.00128</td><td>0.00167</td><td>0.00418</td><td>0.04917</td></tr><tr><td>주거용 단독주택</td><td>1.3321</td><td>0.0010</td><td>－</td><td>0.0968</td><td>0.0263</td><td>0.2030</td><td>1.6792</td></tr><tr><td>아파트</td><td>1.4770</td><td>0.0655</td><td>－</td><td>0.0150</td><td>0.0261</td><td>0.1637</td><td>1.7993</td></tr><tr><td>철근콘크리트조</td><td>1.4028</td><td>0.0170</td><td>－</td><td>0.0638</td><td>0.0215</td><td>0.1348</td><td>1.6959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</td><td>철골조</td><td>0.9167</td><td>0.0550</td><td>－</td><td>0.0194</td><td>0.0261</td><td>0.1348</td><td>1.1624</td></tr><tr><td>철골철근콘크리트조</td><td>1.5861</td><td>0.1220</td><td>－</td><td>0.0018</td><td>0.0245</td><td>0.1452</td><td>1.8796</td></tr></table> [주]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, 폐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벽돌,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.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,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.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(연면적/건축면적)이 20 미만일 경우 15%, 20을 초과할 경우 20%이내에서 폐 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.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%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. ⑤ 건축물의 특성,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.	구분		폐콘크리트류	폐금속류	폐보드류	폐목재류	폐합판류	혼합폐기물	총계	신축	주거용 단독주택	0.03200	－	0.00051	0.00300	0.00174	0.00653	0.04378	아파트	0.03561	－	0.00066	0.00416	0.00233	0.00874	0.05150	철근콘크리트조	0.04888	－	0.00117	0.00141	0.00445	0.00664	0.06255	철골조	0.02920	－	0.00117	0.00071	0.00167	0.00353	0.03628	해체	철골철근콘크리트조	0.04087	－	0.00117	0.00128	0.00167	0.00418	0.04917	주거용 단독주택	1.3321	0.0010	－	0.0968	0.0263	0.2030	1.6792	아파트	1.4770	0.0655	－	0.0150	0.0261	0.1637	1.7993	철근콘크리트조	1.4028	0.0170	－	0.0638	0.0215	0.1348	1.6959		철골조	0.9167	0.0550	－	0.0194	0.0261	0.1348	1.1624	철골철근콘크리트조	1.5861	0.1220	－	0.0018	0.0245	0.1452	1.8796	
구분		폐콘크리트류	폐금속류	폐보드류	폐목재류	폐합판류	혼합폐기물	총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축	주거용 단독주택	0.03200	－	0.00051	0.00300	0.00174	0.00653	0.0437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아파트	0.03561	－	0.00066	0.00416	0.00233	0.00874	0.05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철근콘크리트조	0.04888	－	0.00117	0.00141	0.00445	0.00664	0.0625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철골조	0.02920	－	0.00117	0.00071	0.00167	0.00353	0.0362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체	철골철근콘크리트조	0.04087	－	0.00117	0.00128	0.00167	0.00418	0.049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거용 단독주택	1.3321	0.0010	－	0.0968	0.0263	0.2030	1.679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아파트	1.4770	0.0655	－	0.0150	0.0261	0.1637	1.799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철근콘크리트조	1.4028	0.0170	－	0.0638	0.0215	0.1348	1.695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철골조	0.9167	0.0550	－	0.0194	0.0261	0.1348	1.16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철골철근콘크리트조	1.5861	0.1220	－	0.0018	0.0245	0.1452	1.879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2020년 하반기 적용

- 제2장 가설공사 -

2020. 6.



국토교통부
한국건설기술연구원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
- 적정검토	2-8-1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(10㎡당)		
	구분	구격	단위
	비계공	설치, 해체	인
	보통인부	설치, 해체	인
	수량	0.30	0.10
	[주] ①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(수평방향 3m이하)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.		
	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		
	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.		
	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,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'[공통부문] 2-2-4 구조물비계'를 따른다.		
	(㎡당)		
	구분	구격	단위
	강관	ø48.6mm×2.4mm	m
	브라켓		개
	철판		kg
	클램프		개
	그물망		㎡
	수량	2.70	0.26
	0.25	0.27	1.24
	※ 위 재료량은 합증이 포함되어 있으며,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%로 한다.		
	2-8-1 낙하물 방지망(비계) 설치 및 해체 (10㎡당)		
	구분	단위	수량
	- 현행과 동일 -		
	[주] ①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(수평방향 3m이하)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		
	② 본 품은 지지대, 연결재,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		
	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.		
	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		
	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,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'[공통부문] 2-2-4 구조물비계'를 따른다.		
	(㎡당)		
	구분	구격	단위
	강관	ø48.6mm×2.4mm	m
	브라켓		개
	철판		kg
	클램프		개
	그물망		㎡
	수량	2.70	0.26
	0.25	0.27	1.24
	※ 위 재료량은 합증이 포함되어 있으며,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%로 한다.		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																			
－ 신설		2-8-3 낙하물 방지망(시스템방호) 설치 및 해체 (10㎡당)																				
	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단위</th><th>수량</th></tr><tr><td>비계공인</td><td>인</td><td>0.25</td></tr><tr><td>보통인부</td><td>인</td><td>0.10</td></tr></table>		구분	단위	수량	비계공인	인	0.25	보통인부	인	0.10										
		구분		단위	수량																	
		비계공인		인	0.25																	
		보통인부		인	0.10																	
[주]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(수평방향 4m이하)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																						
② 본 품은 지지대, 연결재,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																						
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.																						
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																						
－ 신설		2-8-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 (10개소당)																				
		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단위</th><th colspan="5">개구부 면적</th></tr><tr><th>1.0㎡이하</th><th>1.0~3.0㎡이하</th><th>3.0~6.0㎡이하</th><th>6.0~9.0㎡이하</th><th>9.0~12.0㎡이하</th></tr><tr><td>비계공인</td><td>인</td><td>0.49</td><td>0.63</td><td>1.01</td><td>1.30</td><td>1.60</td></tr></table>		구분	단위	개구부 면적					1.0㎡이하	1.0~3.0㎡이하	3.0~6.0㎡이하	6.0~9.0㎡이하	9.0~12.0㎡이하	비계공인	인	0.49	0.63	1.01	1.30	1.60
		구분				단위	개구부 면적															
				1.0㎡이하	1.0~3.0㎡이하		3.0~6.0㎡이하	6.0~9.0㎡이하	9.0~12.0㎡이하													
		비계공인		인	0.49	0.63	1.01	1.30	1.60													
[주] ① 본 품은 창호,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																						
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,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																						
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																						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																
- 신설		2-8-11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 (10m당)																	
		<table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단위</th> <th colspan="2">브라켓형</th> <th colspan="2">앵커형</th> </tr> <tr> <th>2단</th> <th>3단</th> <th>2단</th> <th>3단</th> </tr> <tr> <td>비계공</td> <td>인</td> <td>0.56</td> <td>0.62</td> <td>0.64</td> <td>0.70</td> </tr> </table>		구분	단위	브라켓형		앵커형		2단	3단	2단	3단	비계공	인	0.56	0.62	0.64	0.70
		구분				단위	브라켓형		앵커형										
				2단	3단		2단	3단											
		비계공		인	0.56	0.62	0.64	0.70											
		비고		-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. <table> <tr> <th>설치간격</th> <th>1.0m이하</th> <th>1.5m이하</th> <th>1.5m초과</th> </tr> <tr> <td>요율</td> <td>110%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/tr> </table>				설치간격	1.0m이하	1.5m이하	1.5m초과	요율	110%	100%	90%				
		설치간격		1.0m이하	1.5m이하	1.5m초과													
		요율		110%	100%	90%													
		[주] ① 본 품은 발코니, 슬래브 등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																	
		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, 3단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2개소 설치하는 기준이다.																	
③ 본 품은 난간 기둥, 상부난간대,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																			
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.																			
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																			
		2-8-12 계단난간대 설치 및 해체 (10개소당)																	
		<table> <tr> <th>구분</th> <th>단위</th> <th>브라켓형</th> <th>앵커형</th> </tr> <tr> <td>비계공</td> <td>인</td> <td>1.40</td> <td>1.45</td> </tr> </table>		구분	단위	브라켓형	앵커형	비계공	인	1.40	1.45								
		구분		단위	브라켓형	앵커형													
		비계공		인	1.40	1.45													
		[주] ① 본 품은 계단구간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																	
		② 난간대 규격은 길이 2.5m이하, 난간대 2단 기준이다.																	
		③ 본 품은 난간 기둥, 상부난간대,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																	
		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.																	
		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																	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						
－ 신설		2-8-13 엘리베이터 난간틀 설치 및 해체 (10개소당)							
	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단위</th><th>수량</th></tr><tr><td>비계공</td><td>인</td><td>0.80</td></tr></table>		구분	단위	수량	비계공	인	0.80
		구분		단위	수량				
		비계공		인	0.80				
		[주]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틀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 ② 난간틀 규격은 높이 1.4m이하, 길이 1.3m이하를 기준한다. ③ 본 품은 난간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							
－ 신설		2-8-14 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 (10개소당)							
	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단위</th><th>수량</th></tr><tr><td>비계공</td><td>인</td><td>1.50</td></tr></table>		구분	단위	수량	비계공	인	1.50
		구분		단위	수량				
		비계공		인	1.50				
		[주]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통로 내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방향의 방호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 ② 추락방호망 규격은 5~9㎡이하를 기준한다. ③ 본 품은 방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							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		
- 신설		2-8-16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설치 및 해체			
		(m당)			
		구분		단위	수량
		비계공		인	0.12
		[주] ① 본 품은 타워크레인 주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. ② 본 품은 울타리 높이 2.0m 기준이다. ③ 본 품은 앵커구멍 뚫기, 울타리 및 출입문 조립설치·해체 작업을 포함한다. ④ 우수방지책을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.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			